

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국가정보원 특정직 3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1년, 특정직 4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2년, 특정직 5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3년씩 각각 연장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전문인력의 조기퇴직을 방지하고,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역량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22조제1항제2호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·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혜 진)